



오 산 소 방 서



수신 입주자대표 및 관리소방(소방안전관리자) 귀하
(경유)

제목 **부주의로 인한 화재위험성 홍보를 위한 안내 협조**

1. 평소 소방안전 및 화재예방에 힘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.
2. 최근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아파트 입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임과 같이 서한문 및 안내문을 보내드리니,
3. **공동주택 화재예방 안내문**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(소방안전관리자)께서는 입주민의 안전을 위한 예방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아파트 화재예방 서한문 1부.
2. 공동주택 화재예방 안내문(게시용) 1부. 끝.

오 산 소 방 서



지방소방위 **이한영**

예방대책팀장 **김용두**

재난예방과장 **김종식**

전결 2019. 5. 15.

협조자

시행 재난예방과-6951

(2019. 5. 15.)

접수

우 18119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55-6, (청학동, 오산소방서) (청학동) / <http://119.gg.go.kr/osan/>

전화번호 031-8059-7315 팩스번호 031-8059-7329 / pownomic1@gg.go.kr / 부분공개(6,7)

화재예방을 위한 당부말씀

평소 소방행정과 화재예방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그동안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.

최근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전체화재의 66%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담배꽂초와 음식물 조리로 인한 화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특히 전년도 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67%(아파트 17%)가 주택에서 발생하는 등 소중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

이에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안내 드리니,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시어 화재로 인해 고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소화기 등 소방시설은 항상 정상 작동되도록 유지·관리 철저
- 담배는 지정된 곳에서 피우고 흡연 후 소등확인 철저
- 음식물 조리 시 화재예방을 위한 가스밸브 타이머 꼭 설치
- 비상구 폐쇄 근절 및 계단·피난동선 상 자전거 등 물건 적치 금지
- 화재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·정차 금지
- 입주자들의 화재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안내방송 및 관리감독 강화

소방서에서는 사전고지 없이 **불시단속**을 통하여 방화문 훼손, 피난로 상 물건적치 등을 **집중 단속**할 예정이니,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소방시설 및 피난·방화시설의 **유지·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하게 지속 추진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귀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안전을 위하여 주인의식을 갖을 수 있도록 화재예방 안내 및 홍보와 예방활동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,

끝으로 귀 공동주택 및 가정에 안전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.

2019년 5월

오 산 소 방 서 장

공동주택 화재대비 이것만은 꼭 실천합시다

(아파트 게시판 부착용)

아파트 화재대비! 이것만은 꼭 실천합시다.

- 아파트 세대별로 소화기를 비치하고 수시로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합니다.
- 누전차단기의 시험스위치를 월 1회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는 여러 개의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.
- 화재발생시를 대비하여 평상시 피난방법, 피난로 등을 숙지하여야 합니다.
- 가스렌지 밸브와 중간밸브는 사용 후 항상 잠그고, 월 1회 이상 누설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보일러실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 등을 방치하지 말고, 보일러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아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베란다에 설치된 비상탈출구(경량칸막이) 앞에는 평상시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 등을 적재해 놓지 말아야 합니다.

옥상 출입문은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합니다.



베란다에 설치된 피난기구(완강기)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.



화재등 비상시 인명구조를 위한 공기안전매트 부서공간은 확보되어야 합니다.



소방차전용

세대사이에 설치된 경량칸막이 앞에는 화재시 피난할 수 있도록 물건 등을 적치하지 말아야 합니다.



계단 및 통로에는 피난상 장애가 되는 물건이 없어야 합니다.



소방차 전용주차공간은 항상 소방차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.



오 산 소 방 서